

개정 : 2024. 2. 16.

정 관



학교
법인 **꽃동네현도학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기초로 가톨릭이념과 꽃동네정신에 입각하여
고등교육 · 중등교육 · 초등교육 및 유아특수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7. 12., 2004.3.19.)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꽃동네현도학원(이하 “법인” 이라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7.12.10.)

제3조(설치학교)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개정 2000.7.12., 2004.3.19., 2011.8.17.)

1.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 꽃동네학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북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47-93에 둔다. (개정
2012.7.10.)

제5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10.)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자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04.3.19.)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과실 및 국내외의 기부금과
기타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
한다.

②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한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
사장이 집행한다. (개정 2007.12.10.)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10.)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 이월사용분을 제외하고 적립 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절 삭제(2007.6.14.)

제13조 삭제(2007.6.14.)

제14조 삭제(2007.6.14.)

제15조 삭제(2007.6.14.)

제16조 삭제(2007.6.14.)

제17조 삭제(2007.6.14.)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7.6.14.)

1. 이사 8 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 인

제18조의 2(임원의 자격) 이 법인의 이사(개방이사 포함) 및 감사는 가톨릭교회에서 세례성사·견진성사를 받고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자 중에서 가톨릭이념과 꽃동네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한다. (신설 2007.6.14.)

제18조의 3(개방이사 및 감사의 정수) ① 이 법인의 이사 중 개방이사의 수는 2인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개방감사의 수는 1인으로 한다.(이하 “개방임원” 으로 한다) (신설 2007.6.14.)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5년
 2. 감사 3년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는 중임할 수 있고,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07.6.14.)
(개정 2019.12.18.)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 정원 중 과반수는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자매회 소속 수도자로 하고 나머지는 예수의꽃동네 재속회원·꽃동네회원 및 교육계 등의 덕망 있는 인사로 한다. (신설 2007.6.14.)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7.6.14.)

④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선임은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개방임원의 선임) ① 이 법인은 개방임원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임원의 경우 임기만료 전 3월)에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0.)

② 이 법인은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 할 때 제18조의 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이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개방 감사의 경우1인)를 법인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 한다. (개정 2007.12.10.)

[본조신설 2007.6.14.]

제20조의 3(개방임원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사의 경우 대상인원의 2배수를, 감사의 경우는 1인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한다.

1. 추천공문 1부
2. 추천대상자의 인적사항(이력서) 1부
3. 후보자 동의서 1매
4. 각 위원회의 회의록1부
5. 세례성사·견진성사증명서 및 교적확인서 각1부
6. 기타 학교법인 이사회가 요구하는 증빙서류

② 개방임원의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추천 순위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10.)

[본조신설 2007.6.14.]

제20조의4(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

(개정 2011.8.17.)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 2인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 2인
3. 학교법인에서 추천한 자 : 3인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7.12.10.]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개정 2007.6.14.)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2007.12.10.)

제21조의2(상임이사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이사회에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4.3.19.)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6.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0.6.8., 2002.10.21., 2004.3.19., 2007.12.10.)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2002.10.21 자구수정)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이 법인의 직원 및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07.6.14., 2007.12.10.)

제2절 이사회

제26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9.4.24., 2019.7.23.)

1. 정관변경 및 규정제정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기관 또는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 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한 중요사항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0.6.8.)

제27조(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개정 2007.6.14.)

② 이사회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이 정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6.14.)

제28조(이사회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개정 2007.6.14.)

제29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7.6.14.)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그 전원이 이사회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이사회회의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을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4.)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4장 수익사업 (개정 2017.7.19.)

제31조 삭제(2001.11.23)

제31조의 1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수익사업
2. 기타 1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본조신설 2001.11.23.]

제31조의 2 (수익사업의 명칭) 제31조의 1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분사무소를 경영한다.

[본조신설 2001.11.23.]

제31조의 3 (수익사업체의 주소) 분사무소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18에 둔다. (개정 2013.10.16.)

[본조신설 2001.11.23.]

제31조의 4 삭제(2017.7.19.)

[본조신설 2001.11.23.]

제31조의 5 (관리인) ① 제31조의 2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신설 2001.11.23.)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종전 제31조의4에서 이동 2017.6.23.]

제5장 해 산

제32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하여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교 법인이나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천주교 단체에 기부하여 귀속하게 한다. (개정 2008.10.13., 2011.2.11.)

제34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8.10.13., 2011.2.11.)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35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0.6.8., 2013.1.9., 2019.12.18.)

② 제1항 이외의 교원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교의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개정 2000.6.8., 2002.10.21., 2007.6.14., 2011.2.11., 2019.4.24.)

1. 근무기간

가.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 교 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 교 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라. 삭제(2012.7.10.)

2. 급여 : 제41조에 의한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소속 학부 및 소속 전공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학생지도 및 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특수학교 정규직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12.19.)

④ 대학원장 및 각 처장 보직은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2.11.26., 2004.3.19., 2011.2.11., 2019.2.8.)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4.)

⑥ 대학교육기관이외의 교직원의 보직은 당해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보하고 그 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6.9.)

⑦ 대학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8.10.13.)

⑧ 전 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8.10.13.)

[제목개정 2019.4.24.]

제35조의2(비전임교원) ① 명예교수, 초빙교원, 겸임교원, 객원교수, 석좌교수 등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7.23.)

② 대학교육기관의 강사는 학교의 장이 임용하며 그 절차와 신분보장, 징계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신설 2019.7.23.)

②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또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 임용하거나 당연 퇴직한다.(개정 2019. 7.23.)

[본조신설 2012.7.10.]

제35조의3(기간제교원) ①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 꽃동네학교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 교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8.]

2관 신분보장

제36조(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3., 2019.4.24., 2019. 7.23., 2019.12.18.)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

동 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제37조(휴직의 기간) ①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24., 2019.12.18.)

1. 제36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제36조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6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36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36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6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 6의2. 제36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36조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36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6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36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11. 제36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38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6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④ 제②항 및 제③항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복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신설 2007.6.14.)

제39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6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6.8., 2019.4.24.)

② 제36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24., 2019.12.18.)

제40조(직위의 해제)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4., 2019.7.23.)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4.)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9. 4. 24.)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4.)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항 제2호·제3호 또는 제1항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다.(개정 2019.7.23.)

⑧ 삭제(2019.12.18.)

[제목개정 2019.12.18.]

제40조의2(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8.]

제41조(보수 및 수당) 교원의 보수 및 수당은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10.21.)

제42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07.12.10.)

제44조(명예퇴직수당)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30년 이상 근속한 자 또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나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 지급액 ·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5조(정년 등)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의 정년 등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단,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4.6.23., 2013.10.16.)

제45조의2(원로교사)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 소지자)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3.]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6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 (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10.21., 2019.12.18.)

제4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4.3.19., 2019.4.24., 2019.12.18.)

1. 교원의 임용 제청에 관한 사항
2. 기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기획관리처장 · 교목처장 · 교무입학처장 · 학생지원처장 등을 포함하는 5인의 교직원으로 조직하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0.6.8., 2002.11.26., 2004.3.19., 2016.5.1., 2019.2.8., 2019.4.24.)

②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꽃동네학교의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교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12.18.)

제49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2.18.)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18.)

제50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9.12.18.)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 한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2.18.)

제53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4관 교원징계위원회

제54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원(이하 ‘교원’에는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겸임교원 등과 특수학교의 기간제교원을 포함하지 않는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본 정관과 사립학교법 및 기타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개정 2022.6.21.)

③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6.21.)

④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2.6.21.)

⑤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22.6.21.)

⑥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누우치게 한다. (개정 2022.6.21.)

[본조신설 2020.12.16.]

제54조의2(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두며, 6인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6., 2022.6.21.)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4인과 법령에 따른 외부위원 2인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9.18., 2022.6.21.)

③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제1항의 외부위원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촉된 학부모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한다. (신설 2022.6.21.)

④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6.21.)

⑤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개정 2022.6.21.)

[제54조에서 이동 (2020.12.16.)]

[제목개정 2020.12.16.]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
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9.4.24.)

제57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8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
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9조(징계의결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4.)

제60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18.9.18., 2022.6.21.)

-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징계 처분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2022.6.21.)

- ④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6.21.)

제62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3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경우에는 10년)을 경과 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7.6.14., 2018.9.18.)

제64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5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9.18.)

제2절 사무직원 (개정 2007.12.10.)

제66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귀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일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7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대우직원선발·근속승진제·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 등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1.2.11., 2019.4.24.)

제68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며 꽃동네학교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14.)

제69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일반표준생계비 및 사회일반기관의 임금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정으로 정하며 꽃동네학교 일반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6.8., 2016.12.14.)

제70조(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4.24.)

제70조의 1(꽃동네학교 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중 정년퇴직 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자진 퇴직하고자 할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③ 수당의 지급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14.]

제70조의 2 (꽃동네학교 특별승진) ① 정관 제70조의1에 의거 명예퇴직을 하는 자가 근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 할 수 있다.
② 특별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14.]

제71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되 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둔다.
② 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72조(법인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② 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좌역(부장)을 두며, 보좌역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신설 2016.3.1.)
③ 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 관리과와 재무과를 두며 각 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대 학교

제73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관리처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4.3.19., 2019.2.8., 2019.4.24.)

제73조의 2(대학원장 등) ①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본조신설 2002.11.26.]

제73조의 3(대학평의회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10.)

[본조신설 2007.6.14.]

제73조의 4(평의원의 구성) ① 평의회는 가톨릭교회에서 세례성사·건진성사를 받고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며,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원·직원 및 조교·학생·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1인 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3.)

1. 교원 3 인

2. 직원 및 조교 2 인

3. 학생 1 인

4. 동문 및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5 인

② 평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4.]

제73조의 5(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여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23.)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에서 추천한 2인과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한 1 인

2. 직원 및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학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의원은 외부 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한 자

[본조신설 2007.6.14.]

제73조의 6(평의회 의장 등) ① 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07.6.14.]

제73조의 7(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학생 대표의 경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6.14.]

제73조의 8(평의원의 기능)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개정 2007.12.10.)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7.6.14.]

제73조의 9(평의원회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7.6.14.]

제74조(본부행정조직) ① 대학교에 기획관리처·교목처·교무입학처 및 학생지원처를 둔다.

(개정 2011.9.29., 2016.6.1., 2019.2.8.)

② 각 처에는 필요한 부, 관, 센터 또는 과, 팀을 두고,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단,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 또는 차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차장은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9.29., 2019.2.8., 2023.2.7.)

③ 삭제(2011.9.29.)

④ 삭제(2011.9.29.)

⑤ 삭제(2011.9.29.)

⑥ 삭제(2011.9.29.)

⑦ 삭제(2011.9.29.)

⑧ 삭제(2011.9.29.)

⑨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9.)

제74조의 1 (대학원 등의 행정조직) ① 대학원 등에 교학과를 둘 수 있으며, 과장은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교학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29.]

제75조(부속 및 부설기관 등)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교육·연구·실습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 시설 등을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19., 2017.10.25., 2019.2.8., 2023.2.7., 2023.12.19., 2024.2.16.)

1. 부속기관 - 도서관, 출판부, 가톨릭국제교육원, 아미쿠스(가상) 복지관, 생활관, 보건실, 인권센터, 심리상담센터

2. 부설교육기관 - 카리타스평생교육원, BLS센터, 생명문화센터

3. 부설연구기관 - 카리타스복지연구소

② 부속 및 부설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또는 참사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원장(부센터장, 부소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부센터장, 부소장)은 교원으로 보하고 수탁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외부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19., 2023.2.7., 2024.2.16.)

- ③ 부속 및 부설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④ 부속 및 부설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7.19.)

제76조(도서관) ① 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 도서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도서관에는 수서과와 열람과를 두며, 각 과의 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참사로 보한다. (개정 2007.6.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77조(전산소) 삭제 (2011.9.29.)

제77조의 1(산학협력단) ①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8.17.)
 ② 산학협력단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참여로 보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04.4.17.]

제3절 특수학교

제78조(교장 등)

- ① 꽃동네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②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 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3.19.)
 [본조신설 2000.7.12.]

제78조의 2(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가톨릭 이념과 꽃동네 정신을 구현하며, 지역의 실정 및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본조신설 2007.6.14.]

제78조의 3(교원위원의 선출절차)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의 선출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하여 정수의 2배를 추천한다.
 ② 학교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자 중에서 교원위원을 위촉한다.
 [본조신설 2007.6.14.]

제78조의 4(학교 규정예의 위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 중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7.6.14.]

제78조의5(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에우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본조신설 2007.6.14.]

제78조의 6(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78조의 4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4.]

제78조의 7(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7.6.14.]

제79조(행정조직) 꽃동네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그 분장업무는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9., 2011.9.29.)

[본조신설 2000.7.12.]

제4절 정 원

제80조(정원) 법인 및 법인 설치학교의 직원정원은 각각 별표1 내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0.7.12., 2004.3.19., 2016.3.1.)

제8장 보 칙

제81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또는 충청북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1.12.23.]

제8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81조에서 이동 (2021.12.23.)]

제83조(청렴의무) ① 법인 이사장, 법인의 임직원 및 소속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임원 및 교직원”이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6.)

② 삭제(2022.12.6.)

[본조신설 2022.9.15.]

제84조(행동강령) ① 제83조의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이사장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4.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원 및 교직원이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임원 및 교직원이 제2항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2.7.]

제85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 임원은 다음과 같다.

[제82조에서 이동 (2021.12.23.)]

[제83조에서 이동 (2022.9.15.)]

[제84조에서 이동 (2022.12.6.)]

이 사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정진석	1931. 12. 7.	5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59
이 사	오웅진	1945. 8. 20.	5년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 1-45
이 사	박연호	1932. 3. 18.	5년	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 402-13호
이 사	안치열	1922. 2. 27.	2.5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호수마을 럭키아파트401-803
이 사	장인산	1947. 2. 13.	2.5년	대구시 중구 남산3동 219
이 사	신상현	1955. 5. 5.	2.5년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 1-45
이 사	고란정	1966. 3. 4.	2.5년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 1-45
감 사	이종남	1936. 9. 30.	2년	서울 마포구 성산동 256-31
감 사	임광규	1939. 10. 7.	1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8-16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설치·경영학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적용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1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2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3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4차 개정)

②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명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3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 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5차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6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7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8차 개정)
-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은 제45조 변경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학교의 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9차 개정)
- ②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임원은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3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0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11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12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13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14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15차 개정)
- ② 정관 제26조의1, 제41조, 제65조,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제69조, 제71조 제2항, 제72조의 제3항, 제74조의 제9항, 제75조의 제4항, 제76조의 제3항, 제79조 중 “규칙” 을 “규정” 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16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17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18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19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21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22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3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24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25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26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27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8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29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30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31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32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33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20조의4제1항, 제77조의1제1항, (별표2)의 변경교명은 관할청의 교명변경 인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34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35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36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37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38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39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40차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41차 개정)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15명
일반직계	12명
2급 (참여)	1명
3급 (부참여)	1명
4급 (참사)	1명
5급 (부참사)	2명
6급 (주사)	2명
7급 (부주사)	2명
8급 (서기)	2명
9급 (부 서 기)	2명
기능직계	3명
5등급 (운전기사)	1명
6등급 (기관기사)	1명
7등급 (전기기사)	1명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

(단위: 명)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개정 2011.8.17., 2021.4.22.)		꽃동네학교 (개정 2013.10.16., 2014.4.30., 2016.12.14., 2017.12.15., 2021.2.26.)	
구 분	정원	구 분	정원
총 계	80	총 계	8
일반직계	45	일반직계	8
2급참여	3		
3급(부참여)	3		
4급(참사)	8	6급(교육행정)	1
5급(부참사)	5	7급(교육행정)	1
6급(주사)	8	8급(교육행정)	1
7급(부주사)	5	9급(사무운영, 시설관리)	2
8급(서기)	5	9급(운전)	3
9급(부서기)	8		
기술직계	8		
4급(사서·참사)	2		
6급(사서·참사)	2		
7급(사서·부주사)	2		
8급(사서·서기)	2		
기능직계	27		삭제
6등급(운전기사)	1		
6등급(경비원)	1		
6등급(인쇄기사)	1		
6등급(사진기사)	1		
6등급(전기기사)	1		
7등급(기관기사)	1		
7등급(경비원)	2		
7등급(운전기사)	4		
7등급(원예기사)	2		
7등급(시설기사)	1		
7등급(위생기사)	1		
7등급(영양사)	1		
7등급(전기기사)	1		
8등급(경비원)	2		
8등급(기관기사)	4		
운전기사(특수학교 및 유치원)			
9등급(목공기사)	2		삭제
9등급(도장기사)	1		
특수학교 및 유치원기능직 (전기,보일러,노무,조리,보육)			삭제

기본재산 목록

1. 교육용 기본재산 목록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환산가격(원)	비고
충북 청원군 현도면 상삼리	374	답	2,499	14,294,280	
//	375	답	2,030	11,611,600	
//	376-1	답	3,187	18,229,640	
//	376-2	답	2,744	15,695,680	
//	산 32	임	6,149	22,259,380	
서울은행 외 8건		예금		4,000,000,000	
합계				4,082,090,580	

2. 수익용 기본재산 목록

(단위: 원)

소지	지목	지적(㎡)	공시지가	평가액	비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임야	9,917	92,200	912,364,000	
충북 청원군 부용면 등곡리	임야	41,355	1,340	55,415,700	
//	임야	28,760	1,350	38,826,000	
//	임야	20,484	1,600	32,774,400	
//	임야	4,354	1,370	5,964,980	
//	임야	32,628	1,370	44,700,360	
	예금			1,000,000,000	
		137,498		2,090,045,440	